

# 자체감사 규정

제정 2013. 3. 1.    개정 2013. 7. 1.  
개정 2013. 11. 15.    개정 2014. 3. 1.  
개정 2015. 8 .31.    개정 2016. 7. 28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경대학교 총장(이하 “총장” 이라 한다.) 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감사범위)**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11.15.>

- ①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 <신설 2013.11.15.>
- ② 회계업무 및 재산관리 사항 <신설 2013.11.15.>
- ③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<신설 2013.11.15.>

**제3조(감사의 종류)** ① 종합감사는 감사를 받는 대상 부서 및 학부(학과)(이하 “감사대상기관” 이라 한다)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.

- ② 부분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 사항 및 취약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- ③ 기강감사는 비위사실·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.
- ④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가 예방·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한다.

**제4조(종합감사의 주기 등)**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부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- 1. 기획조정실, 교학처, 입학홍보처, 산학협력처, 총무처, 국제교류처 <개정 2014.3.1., 2015.8.31., 2016.7.28.>
- 2. 산학협력단, 디지털정보센터, 전산정보센터, 평생교육원, 보육교사교육원
- 3. 전체 학부(학과)
- 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

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외에 실시하는 감사의 주기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다.

## 제 2 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등

**제5조(감사계획의 수립)**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시행 15일 이전에 감사대상, 감사 실시기간, 감사목적, 감사반 구성, 기타 감사에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15., 2015.8.31., 2016.7.28.>

**제6조(감사실시의 통지)** ① 기획조정실장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. 다만, 감사업무의 수행 상 부득이할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통지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감사반의 편성)** ① 기획조정실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,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② 기획조정실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감사반으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③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**제8조(감사의 방법)**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서 실시하고,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

**제9조(감사의 준비 등)**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 목적,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,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, 감사 착안사항, 감사기법 및 감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반은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인,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
2.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

③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각 전담자에게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분석·정리하도록 하여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감사 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감사 참관인제의 운영)**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서 및 학부(학과)에서 추천한 감사 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, 감사 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**제11조(전문가에 의한 관련서류 등의 검토)**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수분야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

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감사의 실시

**제12조(감사 시 유의사항)** ① 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, 운영방침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감사반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, 위법·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확인서의 요구)**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.

**제14조(문답서의 작성)**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 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·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질문서의 발부 등)**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·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, 답변서를 받아 감사처분 시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현지조치)**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·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, 행위자의 고의·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·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감사결과의 처리

**제17조(감사결과의 보고)** 기획조정실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15., 2015.8.31., 2016.7.28.>

1. 삭제 <2013.11.15.>
2. 삭제 <2013.11.15.>
3. 삭제 <2013.11.15.>
4. 삭제 <2013.11.15.>
5. 삭제 <2013.11.15.>
6. 삭제 <2013.11.15.>
7. 삭제 <2013.11.15.>

**제18조(감사결과의 처분요구)**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징계·경고·주의·변상조치, 시정·개선·통보 또는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총장에게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서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계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그

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19조(고발)**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.

**제20조(이의신청 등)**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교직원 등은 제18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직권재심의)** 기획조정실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15., 2015.8.31., 2016.7.28.>

**제22조(감사위원회)** ① 감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와 총장의 위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7.1.>

② 삭제 <2013.7.1.>

③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감사부서의 소속 직원과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5.8.31., 2016.7.28.>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3.7.1., 2015.8.31., 2016.7.28.>

⑤ 삭제 <2013.7.1.>

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3.7.1.>

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13.7.1.>

1.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
2.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
3. 총장이 위임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
4.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

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<신설 2013.7.1.>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감사대상 부서의 장, 감사반장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신설 2013.7.1.>

**제23조(조치결과의 보고)**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끝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제24조(표창 등의 추천) 기획조정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, 행정 능력의 향상, 예산 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31., 2016.7.28.>

제25조 삭제 <2013.7.1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5조(감사계획의 수립), 제6조(감사실시의 통지) ①항, 제7조(감사반의 편성) ①항, ②항, ③항, 제10조(감사 참관인제의 운영), 제17조(감사결과보고), 제21조(직권 재심의), 제22조(감사위원회)③항, ④항, 제23조(조치결과보고), 제24조(표창 등의 추천)의 기획처장 명칭은 '기획홍보처장' 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5조(감사계획의 수립), 제6조(감사실시의 통지) ①항, 제7조(감사반의 편성) ①항, ②항, ③항, 제10조(감사 참관인제의 운영), 제17조(감사결과보고), 제21조(직권 재심의), 제22조(감사위원회)③항, ④항, 제23조(조치결과보고), 제24조(표창 등의 추천)의 기획홍보처장 명칭은 '기획처장' 으로 개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4조(종합감사의 주기 등) ①항, 제5조(감사계획의 수립), 제6조(감사실시의 통지) ①항, 제7조(감사반의 편성) ①항, ②항, ③항, 제10조(감사 참관인제의 운영), 제17조(감사결과에의 보고), 제21조(직권재심의), 제22조(감사위원회)③항, ④항, 제23조(조치결과에의 보고), 제24조(표창 등의 추천)의 기획처장 명칭은 '기획조정실장'으로 개정한다.